

연금시장리뷰 15호

개인형 퇴직연금 IRA의 특성과 활성화방안

-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채권연구원 : 이태호 이사 (02-6333-1206, thlee62@gmail.com)

○ 개인형 퇴직연금 IRA의 특성과 활성화방안

국내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퇴직계좌는 2010년 1월 말 현재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수의 약 3.2% 수준을 보이나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활성화 되고 있는 OECD 국가들의 해외사례를 참조하고, 퇴직급여제도의 연속성 강화와 개인퇴직계좌의 발전을 위해 기존의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로 시행할 예정인데 아래는 개인형 퇴직연금 법령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다.

첫째로 근로자가 퇴직으로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급여를 55 세까지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의 연속성을 높이고 (제 16 조제 4 항), 현행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DB 형, DC 형에 준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 발전시키며(제 5 장 신설), 자영업도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하여 2 층 노후보장장치(1 층 국민연금, 3 층 개인연금)인 퇴직연금 제도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제 24 조제 2 항), 직장에서 이직하여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된 자도 자신 부담으로 부담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연금의 활용도를 높이며 (제 24 조제 6 항),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동일한 퇴직연금계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제 25 조).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2) 기본펀드(Default Fund)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3) 형평성을 고려한 세제혜택 적정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4) 퇴직금의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여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며, (5) 제도의 단순화를 통해 가입 및 관리, 수수료 부담의 경감을 이루며, (6) 가입자 교육을 강화하여 근로자를 투자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7) 다양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8) 특별히 4 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 공동 운영기관 설립을 통하여 공공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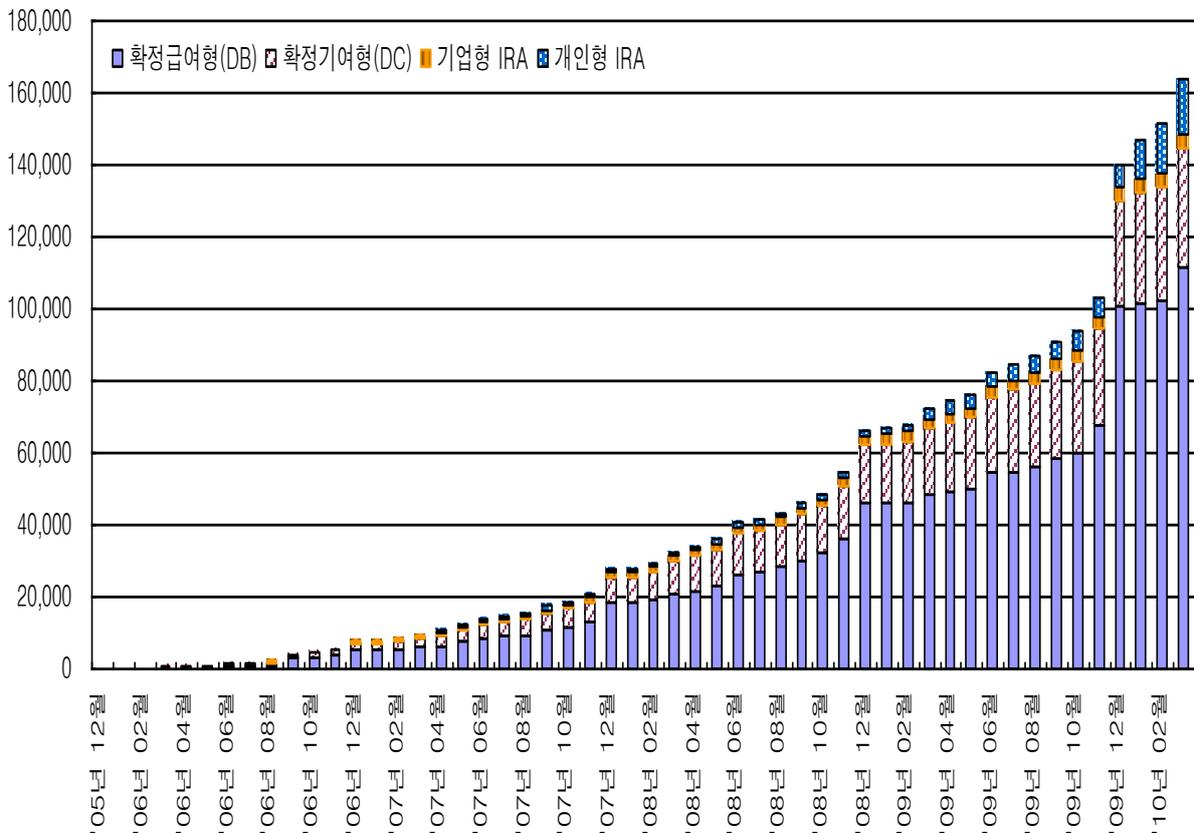
I. 개인 퇴직계좌 현황

○ 국내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운영되고 있음

-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이 일시금 형태로 수령·소진되어 노후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
- 개인퇴직계좌는 기존의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계속 적립되어 근로자의 은퇴 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개인퇴직계좌는 2010 년 3 월 말 현재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수의 약 3% 수준을 보이며,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의 약 11.8%를 차지하고 있음 (아래 참조)

<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 >

(단위 : 억 원)



자료 : 금감원 공시자료 (2010. 3 월말 기준).

II. 개인 퇴직계좌 제도의 특징 및 최근 동향

1. 개인퇴직계좌의 의미

○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함

-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해 설정이 가능함("개인형 IRA"를 말함)

· 현재 법령 및 시행령에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음

- 상시근로자 10 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기업형 IRA"를 말함)

2. 개인퇴직계좌의 운용방법

2.1.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일시금을 수령한 후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 일시금을 적립해도 되고, 일시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개인퇴직계좌의 설정을 맡겨, 일시금이 바로 계좌로 적립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임

○ **개인퇴직계좌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별도로 체결함**

- 개인퇴직계좌는 가입자와 금융기관의 1:1 거래이므로 가입자인 근로자는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두 번 체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

-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도 단체계약으로 일괄 관리하는 경우에 비해 개별관리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

· 향후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통합하여 가입 및 관리가 간편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2.2. 수수료 체계

- 퇴직연금 수수료는 (a) 운영관리 수수료, (b) 자산관리 수수료, (c) 판매수수료 등으로 구성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운영관리와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운용관리 수수료는 사용자 부담, 자산관리 수수료는 규약에 따라 부과
 - 개인퇴직계좌(IRA): 근로자가 모든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존재
- 또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수수료가 적립금의 30% 수준까지도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2.3. 적립금의 운용

-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는 개인연금과 달리 다양한 금융자산 중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은 매 반기 1회 이상 변경이 가능함
 - 개인이 적립금 운용 지시권을 행사하므로 수익률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투자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적립금이 지나치게 투기적이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존재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4. 급여

- 개인퇴직계좌의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의 방법으로 수급이 가능함
 -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함

○ 현재, 개인퇴직계좌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함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 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 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함

2.5. 세제혜택

- 개인퇴직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세제 혜택이 존재함. 또한,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 300 만원 이내 근로소득공제혜택이 존재함

< 개인퇴직계좌의 세제혜택 >

구분		개인퇴직계좌	개인연금
소득공제혜택		- 합산하여 연 300 만원 이내 근로소득공제	
세제	중도 해지시	- 퇴직소득세 적용	- 기타소득세 - 해지가산금 적용
	일시금 지급시	-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
기타		- 가입자의 자산운용 허용	- 추가납입 허용

2.6. 교육

-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매년 1 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 내용은 (1)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2)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 비율 등 운용현황, (3)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4) 가입자의 연령·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 교육의 내용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형)제도와 동일한 내용임

.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다양한 가입자가 예상되므로 절세 효과 등 개인형퇴직연금에 특화된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현재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서면교육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

- 현재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일반개인이라는 특성에 따라 집합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온라인교육도 참여율이 저조함을 보이고 있음
- 대부분 서면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서면교육도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임

< 개인퇴직계좌의 주요특징 >

구분	내용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 -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 -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별도로 체결함 - 수수료를 모두 가입자가 부담
적립금의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금융자산 중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설정, 매 반기 1회 이상 변경 가능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중도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립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이내 근로소득공제 - 소득에 대한 과세 이연: 퇴직소득세 - 중도해지 혹은 일시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금 적용 / 일시금 지급 시 기타소득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 실시 (DC형 제도와 동일) (1)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2)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 비율 등 운용현황 (3)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4) 가입자의 연령·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서면교육의 방법으로 진행

3. 개인퇴직계좌의 문제점 대두

○ 2010 년도 현재 퇴직연금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그 중 개인퇴직계좌는 가입대상자의 확대와 추가납입 등이 주요 쟁점사항임

-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 25 조제 2 항에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를 규정하지 않음
- 국내 자영업인(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은 '06 년 말 기준 취업 근로자 대비 32.8%로 OECD 국가 평균인 16%의 두 배 수준
 -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이동하였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
 - 자영업 대부분의 영업환경이 영세하여 노후보장을 위한 대비책이 절실함(특히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법적 보호가 제약)
- 또한 한국의 근로자의 경우 평균 근속기간('07 년 기준 5.9 년)이 짧으며, 특히 DB 형의 퇴직연금을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 추가납입이 어려움
 - 이직 후 재입사한 사업장이 퇴직금, DB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통산이 불가하여 퇴직 시 소액일시금을 받아 생활비로 소진될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DB 형 가입자가 추가 납입할 수 있고 퇴직금 또는 DB 형 사업장에 이직하는 경우도 통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함.
-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로 자영업인(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직자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관련 규정에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반영의 필요성이 대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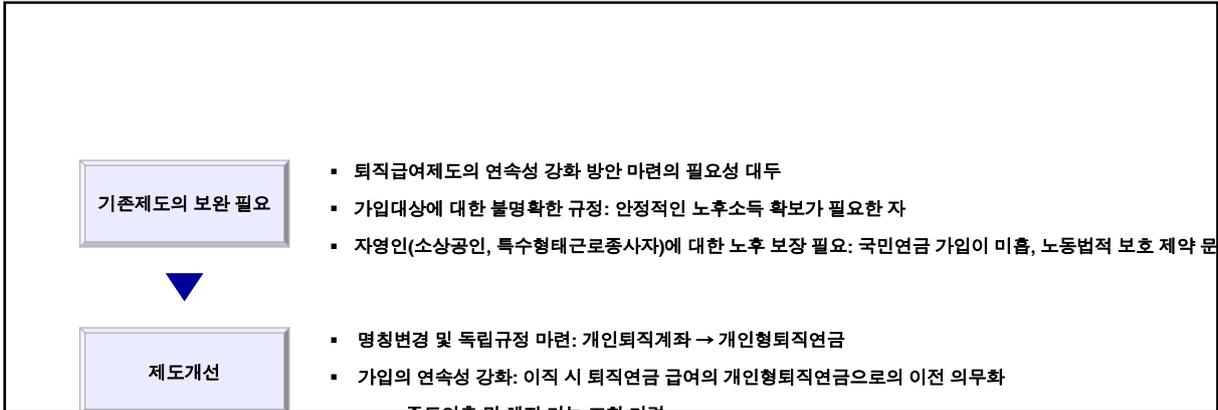
4. 개인형퇴직연금으로의 개정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퇴직급여제도의 연속성 강화와 개인퇴직계좌의 발전을 위해 기존의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법개정을 제출하였음

- 자영업인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입대상자를 확대하여 2 층 노후보장장치(1 층 국민연금, 3 층 개인연금)인 퇴직연금 제도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게 함

- 이직하여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된 자도 부담금의 추가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업형 IRA 의 경우 전부 동의하지 않아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퇴직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개인형퇴직연금의 제도개선 >



Ⅲ. 개인형퇴직연금 활용도 제고방안

1. 개인형퇴직연금 제도개선 및 보완 방안

- 이러한 근퇴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함

-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제도여야하며, (2) 연금 자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화 되어야 하며, (3) 운영의 투명성으로 규제가 용이하여야 하며, (4) 연금 자산 운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야 하며, (5) 연금 제도의 운영이 간편하여야 함

- 선진국의 사례조사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의 주축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개인형퇴직연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자동가입 제도 도입, (2) 기본펀드(Default Fund) 제도 도입, (3) 형평성을 고려한 세제혜택 적정 기준과 근거 마련, (4) 중도인출 요건의 강화, (5) 제도의 단순화(가입 및 관리, 수수료 부담의 경감), (6) 가입자 교육, (7) 다양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함 (8) 개인형 퇴직연금 공동운용기관의 설립

2. 개인형퇴직연금으로의 자동가입제도 도입 제안

-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자동가입을 제안함. 칠레 ICA 와 영국 PA 제도 등과 같이 가입을 원하는 경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혹은 확정기여형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사용자의 제도가 없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적립하도록 제안함
- 이와같이 개인형퇴직연금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중소기업장의 도입·확산효과가 예상되며 4 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마련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있음

3. 기본펀드(Default Fund) 제도의 도입 제안

- 개인이 운용에 대해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기본펀드(default fund)에 투자되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함으로써 가입자들의 투기적 혹은 소극적 운용을 방지할 수 있음
 - 기본펀드(default fund)는 퇴직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전한 자산 위주로 투자하도록 설정하는 연령(age/lifecycle)에 따른 투자전략을 마련하도록 제안
 - 칠레 ICA, 일본 개인형 DC, 아일랜드 PRSA, 영국 PA 사례 등이 존재

4. 형평성을 고려한 세제혜택 적정 기준과 근거 마련

-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제 혜택으로는 과세이연의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국내 제도의 문제점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개인형퇴직연금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1) 세제 혜택의 적정 기준과 (2) 과제기준의 명확성이 필요함
 - 현재 퇴직연금은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이 존재함. 2 층의 강제성을 띠는 퇴직연금과 3 층의 자발적인 개인연금 제도에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차별화 방안이 필요함
 -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 300 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들의 추가납입을 유인할 수준으로는 부족함. 미국은 부부합산 약 930 만원, 50 세 이상 약 700 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존재, 일본은 일반 근로자 약 300 만원, 자영업자 1,060 만원, 아일랜드의 경우 연령대별로 차등적인 세제혜택(30 대 20% 적용, 5%씩 상승하여 60 대에는 40%)을 적용하고 있음. 해외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음. 따라서 현재 한도보다 공제혜택 한도를 증가시켜야 함

- 그러나, 개인형퇴직연금의 추가납입에 대하여 일률적인 세제혜택을 부과할 경우 고소득 계층에 세제혜택 귀속될 우려가 존재함
- 일본의 경우 자영업자의 납입한도와 소득공제에 대해 일반 가입자에 비해 3.8 배의 혜택을 주고 있음. 자영업자의 가입 유도를 위해 세제혜택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될 것으로 예상됨. 자영업자는 일반 가입자와 특성이 다르므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아일랜드의 PRSA 는 연령에 따른 차별적 소득공제 혜택이 존재하며, 독일의 경우 보조금 지급 형태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해외 사례들을 적절히 참고하도록 권고함

5. 중도인출 요건의 강화

- 현재 중도인출에 대한 특정사유를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하였으나, 퇴직급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도인출에 대한 페널티 등을 강화하여야함
- 미국은 중도인출시 소득세 부과와 10% 벌금부과, 일본은 중도인출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독일 및 스웨덴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함

6. 제도의 단순화: 가입 및 관리, 수수료 부담의 경감

- 현재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도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 별도 체결하기 때문에 가입자와 사업자 모두 부담 존재하므로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함
- 현재 개인퇴직계좌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
- 개인퇴직계좌는 가입자 개인과 금융회사의 1:1 계약이므로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계약은 가입자에게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모두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있음
 -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달리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통합하여 가입 및 관리가 간편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절차간소화와 함께 수수료부담의 경감방안 마련 고려가 필요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개인이 모든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운영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판매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는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수수료가 부담금의 30% 수준까지도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5.7. 가입자 교육

- 현재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서면교육의 방법으로 진행되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서면교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서면교육의 효과는 미지수임.

- 따라서 다양한 가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절세효과 등 특화된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실시하는 하는 것이 적절하며, 기본적인 제도의 이해부터 시작하여 투자에 대한 지식 등 향후 퇴직급여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인식교육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함

- 홍콩연금감독청(MPFA)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투자자 인식교육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계와 감독기관이 상호협조 하에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홍콩은 현재 투자자는 물론이고 가족에게까지도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교과과정에도 MPF 투자 교육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 중에 있음

8. 다양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 미국 사례와 같이 가입자들의 수요조사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 IRA, 주택마련 IRA 등 다양한 유형의 개인형퇴직연금을 고려해볼만 함

9.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를 위하여 개인형 퇴직연금 공동 운용기관의 설립

- 현재 별 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2011년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시행될 것임

- 4 인이하의 퇴직급여제도로 가장 적당한 제도가 개인형 퇴직연금이고 이것의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이 나서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적립금 운영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것은 OECD 국가들이 저소득층을 위하여 연금을 보조해 주는 정책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

한국채권연구원 이태호 이사 (02-6333-1206, thlee62@gmail.com)